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1소위26-교01호

민원표시 2AA-2412-0615313 차량 말소등록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9. 8.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A와 신청인의 부친 고인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신청인의 부친(0000. 0. 0.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사망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 폐차를 위한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고인의 공동상속인은 총 0명인데 신청인과 고인의 배우자는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나머지 0명은 신청인의 이복형제들이어서 실제로 만난 적과 연락한 적이 없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노후화 및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 자동차보험비, 자동차세 납부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일 상속인들 중에 행방을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선임 이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사실조회 후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 출생, 0000. 0. 0.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는 김ㅇㅇ(0000년생)이며, 자녀는 이ㅇㅇ(0000년생), 이ㅇㅇ(0000년생), 이ㅇㅇ(0000년생), ㅇㅇㅇ(0000년생, 신청인)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고인의 혼인사항

구분	상세내용
혼인	[혼인신고일] 0000년 00월 00일 [배우자] ◎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0000년 00월 00일 [배우자] ◎
혼인	[혼인신고일] 0000년 00월 00일 [배우자] ★

다.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고인의 제적등본

고인의 자녀	부	모	
이ㅇㅇ	고인	◎	
이ㅇㅇ		◎	
이ㅇㅇ		◎	
(신청인)			★

라. ㅇㅇ손해보험주식회사가 2025. 0. 00. 발행한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2025. 0. 00.부터 2026. 0. 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이다.

마. 피신청인이 2025. 0. 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 차명은 '□', 차종은 '승용 경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최종 소유자는 신청인(99%)과 고인(1%)의 공동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자.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중 이복형제인 0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14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한 점, ④ 이 민원 차량가액은 0,000,000원인데 고인의 지분율(1%)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은 00,000원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가 낮아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이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⑥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 2. 25. 국회에서 발의된 점, ⑤「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 및 차량 고장 이후 방치된 상태로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3.「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